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

의 안 번 호 173

제안연월일: 2014. 11. 26.

제 안 자: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」제33조제2항에 따라 행동 강령 운영에 필요한 공통서식 마련을 위하여 의회규칙을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이해관계 직무회피 소명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.(안 제2조)
- 나, 국내외 활동 사전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.(안 제3조)
- 다. 국내외 활동 보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.(안 제4조)
- 라.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.(안 제5조)
- 마.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.(안 제6조)
- 바. 금전거래·부동산대여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.(안 제7조)
- 사. 위반행위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.(안 제8조)
- 아. 금품 등의 반환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.(안 제9조)
- 자. 금품 등 접수처리 기록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.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: 별첨(12~13쪽)
- 나. 비용추계서 : 미첨부(규칙 제정으로 인한 예반수반사항 없음)

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이해관계 직무회피 소명) 「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 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회피에 대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.
- 제3조(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)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 의 사전 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.
- 제4조(국내외 활동 보고서) 조례 제13제2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 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한다.
- 제5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 조례 제14조에 따른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.
- 제6조(영리행위 신고) 조례 제15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.
- 제7조(금전 거래·부동산대여 등 신고) 조례 제16조2항에 따른 금전 거래· 부동산대여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.
- 제8조(위반행위 신고) 조례 제19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.
- 제9조(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)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공받은 금품 등의 반환에 따른 비용 청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.
- 제10조(금품 등 접수처리 기록)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금품 등 접수 처리 등의 기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호 서식]

	이해관기	ᅨ 직무 회피	에 대한 :	소명서
소 명 자	성 명		정 당	
소	소속위원회			
회피직무	□ 의안 심	사 🗌 예산 심의	의 🗌 행정감	사・조사등 🗌 기타
회피원인		로 인해 회피하는 경 한 직무활동을 할 수		유가 있는 경우
소 명				
내 용				
		20		
		소 명 자	(서기	평)

[별지 2호 서식]

	국니	배외 활	동 사전	! 승인	신청서	
활동목적						
활동사유 및 경과						
지원받은 내 역 (지원기관별)						
활동기간				~	.(일간)	
활동지역 (방문기관)						
	소 속 위원회	직 위	성 명	정 당	활 동 금 액	경 비 부담기관
참가자	계		명		천원	
名/[//r 						
		신청자	20 .	· · ·	당)	

[별지 3호 서식]

	Ę	국내외	활동	보고/	서		
성	명	직	위	정	당	소속	위원회
목	적						
				지원 내	받은 역		
7]	간			방 문 (방문	· 지 역 !기관)		
યગાંભ યા	기취이의 :	체도가러	고레 레1º	০২ খাণ্ড	iol 그저c	ป ml⊐l (olol 71-0
				3 <u>요</u> 세2.6	34 11/89	11 44 F	口开 乍。
		20					
	저	출자		(서	명)		
	목 지원 (E 기	성 명 목 적 지원기관 (단체) 기 간	성명 직 목 적 지원기관 (단체) 기 간 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	성명 직위 목 적 지원기관 (단체) 기 간 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: 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 20	성 명 직 위 정 목 적 지원기관 (단체) 기 간 방문 (방문 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	목 적 지원기관 (단체) 지원 받은 내 역 기 간 방문지역 (방문기관) 선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의 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	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: 목 적 지원기관 (단체) 기 간 방문지역 (방문기관) 생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		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서
신 고 자	성 명	소속위원회 (정당)
외부 강의 및 회의 유형	□ 교육[‡]□ 회의	├정 □ 세미나, 공청회, 토론회, 발표회, 심포지엄 □ 기타()
활동 유형	□ 강의 <i>,</i> □ 심사,	강연 □ 발표, 토론 평가, 자문, 의결 □ 기타()
요 참	기관명	대표자
청 자	담당부서	연락처
요경	성 사유	
7	상 소	
Ċ	빌 시	20 · · · ~ 20 · · · 일괄 월(연)평균 횟수 : 회 시 분~ 시 분 신고 1회 평균 시간 : 시간
τ	게 가	총액 만원 (※ 1회 평균 대가 만원) (교통비 만원, 원고료 만원, 재료비 만원 포함)
		20
		신고자 (서명)
비고	2. 대가는 경우 (유에는 교육과정명, 회의명, 행사명 등을 기재함.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, 교통비, 원고료,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)속에 기재할 수 있음.
		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. P 일괄 신고란에 기재하고,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.

[별지 5호 서식]

					영급	 긔행	위	신	고서					
신 -	성	명					선7	4	지역구					
고 자	소속 ^ç (정						구분	-	비례대	丑				
	명	칭								<u>'</u>				
영리	직	위						Ċ	링리행위기	간				
행위 현황	보	수	(택)	연 월		원 원	전화번호			-				
		장소 소)												
기타														
Ò	인천 된 형리행 5					등강령	조러) >	제15조의	규정	에	따라	위와	같이
					20	•		٠	•					
				신.	고자				(서명	3)				

[별지 6호 서식]

		Ţ	급전	거래(부동	산 대역	여) 신고	人	}	
신	성	명				정당				
신 고 자	소속	위원회				주소				
					신 고	사 항				
□ =	∤전 차	8		금전 대투	<u>L</u>					
		성	명				생년월일			
거	.,	주	소				연락처			
상디	11 58	신고자 관	·와의 계	□ 직무관	· 난런자		방의회의원			
직무관	련 업무									
거래 (이										
거래										
상환	기일									
증빙서	류 목록							*	증빙서류(사본)	첨부
□ 부	동산 디	H역								
		성	명				생년월일			
대 ㅇ	여 인	주					연락처			
		신고지 관	ト와의 계	□ 직무	-관련자		지방의회의	원		
직무관	련 업무									
대	상									
대여	사유									
됐역 및 9	기간 임차료									
증빙서	류 목록							*	증빙서류(사본)	첨부
					20 .					
				신	고자		(서명)			

[별지 7호 서식]

		टॅ	행동강	령 우	리반 ^호	행위	신.	고서			
	성	명				주민 번	등록 호				
신고자	직	업				전화	·번호				
	주	소									
되시크키		명				직	위				
피신고자	소속?										
	2내용	을 확	인·조사ㅎ						을 불	나히는데	
동의	리하는 -	지 여	부 ⇒] 동의			부동의			
신 고											
 내용											
,, 0											
증빙자료									*	증빙자료	. 첨부
목 록											
				20		•					
			신고자		성 대	ਰੋ		(서명)			

[별지 8호 서식]

	Ē	급품 등	등 반혹	환비	용 >	청구	서		
청 구 인	성 명				직	위			
771	소속위원회				정	당			
청구금액									
	금 품 (물 품)								
반환금품	수 량 (금 액)								
및	받은일시								
처리내역	반환일시								
	증빙서류 목록							※증빙서류	분(사본) 첨부
	성 명			주	소				
미취미노	연 락처			l l	구인 관계				
반환받는 사 람	직무관련 내 용								
기 타 사 항									
			20 . 청 구			(>	서명)		

				금署	등 등	접수	- · >	허리 [*]	대장				
일련	접수	저	공받은	자	제공받은	제공				처리	처리	의	장
	일시	소속	성명	연락처	금품등	받은 일시	성명	생년 월일	연락처	내용	일시		인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지방자치법 ○ 제43조(의회규칙) □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(대통령령) ○ 제3조(적용 범위 등) ○ 제21조(행동강령의 운영・처리 등) ○ 제23조(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) □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- 제33조(행동강령의 운영・처리 등) "세부사항 별지 참조"
관련법규 정비대상	"해당사항 없음"
특이사항	"해당사항 없음"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43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□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(대통령령)

제3조(적용 범위 등)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.

- ② 「공무원 행동강령」은 의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.
- 제21조(행동강령의 운영·처리 등)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·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·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- 제23조(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)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.
 -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□ 인천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

- 제33조(행동강령의 운영·처리 등)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·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·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 -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.